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494
----------	-------

발의연월일 : 2026. 4 . 22 .

발 의 자 : 염태영 · 송재봉 · 김남희
민병덕 · 서왕진 · 천준호
이용선 · 최혁진 · 남인순
이해식 · 이광희 · 이학영
김 윤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으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위반 등을 하였을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지급 제한 규정은 지방보조사업자가 공익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사업수행 인건비 및 운영비를 사업비로 인정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져 시민공익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음.

또한 지방보조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단순 행정착오의 경우에도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함으로써 선의의 공익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보조금을 인건비 등 운영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보조사업자의 과실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을 통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12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비를 지방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비는 지방보조사업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사업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과실로 제1항제1호·제2호·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정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정조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비를 지방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비는 지방보조사업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계상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생략) <신 설>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사업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과실로 제1항제1호·제2호·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

<u>②</u> (생략)	<u>한 조치를 할 수 있다.</u>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
---------------	---